

政治權力關係에 있어서 支配 服從의 型態의 考察

許 承 喆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1. 超越的 支配와 盲目的 服從
 - 2. 條件的 支配와 功利的 服從
 - 3. 內在的 支配와 自律的 服從
 - 4. 支配·服從에 對한 倫理性
- III 結 論

I 序 論

政治關係란 政治體의 實在的인 基礎이다. 政治 그것은 이와같이 政治關係에 依해서 基礎된 觀念的인 精神現象이다. A와 B 사이라든가 A'와 B'라고 하는 集團, 階級, 社會間이라든가 A''와 A'''라는 民族이나 國家사이에서 어떠한 政治關係가 成立하였을 때 그 多樣的 政治關係에 實在的인 基礎가 이루어졌을 때 私的인 政治體라든가, 公權力的인 政治體든지 國際的인 政治關係가 成立된다. 封建的인 義理, 人情에 拘束된 前近代的인 徒黨, 典型的인 政治社會로서의 國家, 超民族的인 國際的 結合體 등이 그 어느 것이나 現實的으로는 이와같은 政治關係에 依해서 底礎되어진다. 따라서 集團이나 階級이나 國家의 團體的인 活動을 理念的인 또는 目的論的으로 取해질 分으로서 問題의 解決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政治體를 明確히 하기 爲해서는 먼저 實在的인 底礎者를 究明하고 政治關係의 現實態를 分析하지 않으면 안된다. 政治關係란 그 現實的인 態樣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人間行爲로 還元된다. 그래서 그 人間行爲는 權力에 따라 構成된다. 換言하면 「政治權力은 그것을 行使하는 사람들과 그 行使를 받는 사람들과의 사이의 心理的인 關係이다.」 그 權力을 따라 政治關係는 權力慾의 達成이라는 點에 個人的인 人間行爲에 依해서 나타나지만, 그 達成은 社會統合 및 整序라고 하는 集團的인 人間行爲에 依해서 行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境遇에 있어서도 그것은 支配力·支配機能으로서 社會化 되는 것이다. 그런데 支配力이라든가 支配한다는 機能은 그것 自体로써 成立하는 것은 아니다. 即 自的支配力(Herrschafts macht an sich)도 即 自的支配者權力(Herrscher-gewalt an sich)도 現實的인 意味

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理念的인 要請으로서 概念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現實에서는 支配力도 支配權力도 卽 自態로서 成立되지 않고, 向自的(für sich)인 條件에 依해서 制約되고 있다. 이 向自的인 條件은 바꾸어 말하면 通常 支配의 客体로써 생각되는 被支配者 또는 服從者의 個人的인 또 集團的(階級的)인 壓力이다. Jellinek은 모든 權力的 活動은 「變形된 服從」(verwandelter Gehorsam)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의미에서이다. 그래서 權力은 支配者(統治者) 또는 支配集團, 階級的 固有한 힘만으로써 派生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被支配者, 그 위에 被支配集團, 階級的 服從意志를 條件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은 相對方 卽 服從對象이 없다면 命命할 수가 없는 것이고 社會組織이 그들에게 apparatus of control을 하지 않은한 사람을 統制할 수 없다」(Maclver). 그래서 政治關係는 支配=服從의 關係로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支配의 卽 自態가 成立하지 않은한 向自的 條件으로서의 服從이 前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에 있어서는 支配=服從의 構造性은 明白해 지는 것이다. Merriam은 支配가 하나의 機能이며 共同社會에서 하나의 手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의미는 支配의 主体가 平素 自身の 行爲를 客體의 側에서 廣範하게 倫理的으로 認定되는 雰圍氣 속에서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이다. 支配가 神權에 依해서 支配할 때, 그 神性을 反映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慣習, 習俗에 依한 境遇에는 集團의 諸傳統을 體現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카리스마的인 支配는 被治者의 心理에 과고 들어가 카리스마의 信奉의 念을 保證할 수가 없고, 傳統的인 支配는 그 傳統의 價値를 否定하는 데 依해서는 그 體制를 維持하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Maclver는 이 點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習俗, 慣習, 法律, 傳統, 教化一, 要是 “Operative mztthe of outhority” 權力組織을 統轄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支配體制는 스스로의 支配體制上 어떠한 「正當性」을 호소하드래도 한번 그 正當性이 客觀的인 位置에 놓여지면 그 自體의 「論理」에 依해서 逆으로 그 體制를 限定시킨다. 처음부터 權力이 그와 같은 外에 依해서 強力히 援護되어 十分 正當化된 後에 權力組織 그것은 創造된 社會의 正當性의 한도를 超越해서 行하여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 段階에 이르러 처음으로 權力掌握者는 自己의 優越性을 갖고 좋지 않은 變改를 먼저 阻止하기 때문에 權力의 諸手段을 有效하게 使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政治關係에 있어서는 客體의 諸慾求를 無視할 때는 支配意志가 實現되지 않는다. 權力複合態에 있어서는 支配와 被支配, 權力과 服從과의 關係가 構造的으로 意味的으로도 相互的인 關係에 놓여있다. 支配者의 權力意志와 被支配者의 그것과는 決코 強度에 있어서 다르지는 않다. 權力支配의 態樣은 前者에 있어서는 下向的이고, 後者에 있어서는 上向的이다. 卽 權力意志의 方向이 相反的인 權力意志의 實體에는 變함이 없다. 前者는 後者의 立場에 制約되어 그 諸慾求를 充足 시킨다는 事實에 依하여, 自身の 意志를 滿足시키고, 또한 後者는 前者에 對해서 服從한다는 것에 依해서 스스로의 權力意志를 滿足시키며 自身으로부터의 充足하는 手段으로서 功利的인 打算性을 가지고 있다. 먼저 G E Catlin은 「自己의 意志

를 實行하려는 意志(the will—to execute—my—will)가 支配(domination)와 服從(sulmissien)이라는 二個의 技術手段을 通해서 貫徹하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하여간 어느 쪽도 主体的으로 權力意志의 疎外態는 存在하지 않은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de Grazia는 「支配者는 人民의 믿음에 依存한다. 一旦 人民의 信任을 상실한다면 支配者도 終末이다. 그는 人民의 心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Max weber는 「支配는 個個의 境遇에 千差萬別의 服從의 動機에 根據를 들 수가 있다. 卽 이 動機는 無反省한 慣例로 始作하여 純粹한 目的合理的인 打算에 이르고 있다. 一定最小限의 服從意慾 따라서 服從에 對한(外的 또는 內的) 利害關係야말로 모든 眞正한 支配關係의 土台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實로 支配의 秘密은 服從에 있다고 하겠다. 本稿에서는 이 支配服從의 關係를 類型化해서 考察하고 그 妥當如否에 對하여 論求코져 한다. 支配者와 服從者間에 支配·服從의 正當化는 一定한 支配者로서의 政治目標 또는 理想, 換言하면 一定한 世界觀의인 健全한 政治價値를 前提로 하여야 한다.

Ⅱ 本 論

1. 超越的 支配와 盲目的 服從

Weber에 依하면 超越的 支配는 盲目的 服從(obéissance aveugle)을 豫想하는 支配形成으로서 여기에 있어서 權力的 論理는 보다더 顯著하게 自己의 主張을 要求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支配의 原理는 實際에 있어서 技術的인 制約을 떠나 絶對的 妥當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支配와 被支配와의 關係는 全과 個의 未分化의인 構造下에 놓여 있어 集合的 思惟의 範疇(catégorie de la pensée collective)에 이르러 絶對的인 固定性內에 成立하고 있다. 支配意志 및 權力意志는 그 客体를 無制限으로 左右할 수 있는 內在的 根據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超越的 支配는 보다 原始的이고 素朴한 支配形式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支配의 型은 典型的인 盲目的 服從의 境遇와 같이 하나의 理念型에 지나지 않는다. 歷史的 世界의 境遇에 있어서 超越的 支配의 現象態樣은 이 理念型에 依하여 複雜한 內容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未開社會에 있어서도 또한 어떠한 專制的인 政治組織의 根本에 依해서도 결코 絶對的인 一方의 超越性에 依하여 保障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典型的인 超越的 支配가 盲目的 服從에 呼應한다고 해도 그 盲目的 服從을 하나의 慣習的인 것으로 해서 永續적으로 固定시키기 爲해서는 그 服從態樣에 依據한 基盤關係를 攪亂當하지 않을 程度의 配慮가 客觀的으로 要求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一般的으로 말한다면 超越的 支配를 可能케 하는 것은 絶對的인 服從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Cucièn Lévy-Bruhl은 未開社會

에 「感應의 法則」(Loi de participation)의 存在한다는 것을 指摘한 바 있다. 感應의 法則은 集合表象을 規定하는 것으로서 그 根本은 物이나 存在나 現象은 自己自身임과 同時에 自己 以外의 것일 수도 있다. 論理上的 矛盾에 對해서는 無關心이다. 그렇지만 存在는 自己自身에 있는 것을 中斷하지 않고 自己의 外部에 느끼는 힘이나 性質이라든가 神秘作用을 發해서 다시 自己에게 影響이 미친다. 그래서 未開人은 單純히 對象을 表象한다고 하지 않는다. 對象을 交通하고 身體的, 神秘的인 意味에서 對象을 感應한다. 거기에 主体와 客体가 共生(Snzembiose)이 實現되려면 感應의 法則(Loi de participation)이 服從에 對한 自覺, 적지않게 그 意識을 阻止한다는 것은 明確한 것이다. 未開人の 論理란 「反」論理的(antilogique)이라든가 「非」論理的(alogique)이 아니고 「前」論理的(prélogique)인데 지나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未開社會의 思惟」의 特徵은 絶對的인 集團我が 主体性을 가진다는 데 있다. 그것은 Lucien Lévy-Brvhl가 指摘한 바와 같이 未開人の 心理가 神秘的이고(mystique) 前論理的(Prelogique)인데서 由來한다. 거기에 思惟 및 行動의 主体로서 個人我が 存立할 余地는 없다. 全體의 表象이 이미 個別性을 限定하고 있는 것이다. 全體의 超越性이 個別性의 自覺을 阻止시킨다. 因習이라든지 傳統 및 習俗이 個人의 創造의 自覺 以前에 絶對的인 拘束性을 發揮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未開社會의 特色에 따르는 타인의 宗教規範이라든지 氏族 및 部族의 構成員 全體에서 모이는 集合의 責任(Collective responsibiliy) 등의 諸概念은 어느 것이나 個와 全이 未分化的인 全體關係를 나타낸데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未開社會的인 構造를 前提로 하는 限 支配現象은 絶對的인 超越性을 스스로의 屬性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服從의 心理的 根據는 服從을 服從으로서 自覺하지 않은한 精神狀態를 前提로 하는 것이다. 거기에 盲目的 服從의 政治形式이 成立된다. 거기에서는 被支配者의 精神의 構造가 個와 全이라는 未分化狀態에 依해 規定되어 있는한 支配者가 어느 程度 政治論理를 追求하려는, 「權力의 論理」가 「倫理」에 依하여 規制當한다든지 阻止되는 境遇는 없다. 이와같이 해서 政治의 客体로서의 服從者가 支配者에 對해 「盲目的 服從」이 자행된다. 盲目的 服從이라 하지만 그 언어 自体가 이미 個人의 政治的 主体性을 自覺한 近代意識으로부터 構成된 概念으로서 原始的인 精神構造의 內部에는 먼저 服從한다든가 또는 하고 있다는 自覺은 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條件的 支配와 功利的 服從

條件的 支配란 功利的 服從을 前提로 해서 成立되는 條件的인 支配形式이다. 即 條件的 支配에 있어서는 支配者의 一方의인 支配가 決定力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型의 名稱과 같이 그 支配는 條件的이다. 支配의 主体와 客体는 아무리오리가 成立된 政治關係가 아니라, 그 主体의

政治的 意慾과 行動이라든가 客体에 依해서 條件的으로 制約되는 것을 의미한다. 支配가 이루어지는 過程에서 支配關係가 나타나는 것은 支配의 客体가 이것을 승인하는 結果이다. 卽 이 境遇 主体가 客体를 規定하는 것이 아니고 客体가 主体를 制約하는 것이다. 服從者는 功利的 動機로 因하여 스스로의 服從行爲의 繼續性を 保障하는한 支配行爲는 그 妥當性を 가지는 것이다. 支配者의 「權力意志가 그런데로 社會的인 妥當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意志는 언제나 服從者의 服從行爲를 成立시키려는 狀況에 呼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本質的인 制約이 認定된다. 本來부터 權力複合態의 存在는 먼저 指摘한 바와 같이 대개 一般的인 支配, 服從의 構造에 關係되지 않는다. 하지만 條件的인 支配, 服從이라고 하는 相互作用的인 政治關係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複合態가 지극히 明瞭한 形態로서 存在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複合態 內部에 있어서 支配者는 服從者의 服從이 自己의 權力意志의 強大性이라든가 威壓性 및 優越性에 對해서 忠心으로 服從하는 方法以外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 境遇 支配者도 服從者의 服從動機가 打算性에 있다고 理解하고 있다. 이와같은 解釋에 依해서 支配者는 그 支配行爲를 行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支配行爲의 目的이 最後의 分析에 依해서 權力意志가 滿足되는 境遇에 있어서도 服從者의 功利性を 無視할 수 없다는 制約, 卽 打算性이 現實的인 「保障」이라든가 「滿足」을 받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條件이 숨겨져 있다. 故로 이와같은 典型的인 境遇에 있어서는 服從者가 支配者에 對한 屈從性を 表示하기 以前에 前者가 後者에 對하고 있는 程度의 屈從을 表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深層的 關係가 이룩되는 것이다.

條件的 支配에 對應하는 것이 「功利的 服從」인데 盲目的 服從이 全과 個가 未分化狀態를 前提로 하고 있는데 反해서 이것은 兩者의 分離關係를 一應 前提로 해서 成立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必境 여기에서는 服從이라는 것을 가지고 自己에게 有利하게 하려는 功利的 打算이라는 主体가 豫想되는 것이다. 支配者에 對한 服從意識이 潛在的인 아니라 顯在的인이다. 그래서 이 境遇의 服從意識은 實로 즐겁게 服從한다는 積極的인 의욕의 保證이란 없는 것이다. 支配者나 權力者에 對한 服從은 結局에 있어서는 服從者 自身의 利益을 가지려는 功利的인 打算이 背後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服從型은 廣義에 있어서 封建的 服從이라고 이르는 것이 自然스러운 것이다. 容易하게 權力에 對해서 服從이라든가 阿附를 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체 理性的 存在로써 참기 어려운 事大主義라든가 卑屈從이라든가 奴隸根性은 必然的으로 隨伴當하는 것이다.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는 理性的保證은 없으나 이미 個我意識이 全体로부터 分化過程에서 나타나게 된다. 第1의 型에 있어서 權力에 對한 意志는 政治的 主体者側에 한하여 보여지고 그 客体의 側에 있어서는 「前」服從意識的인 本能的 習性이 決定力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卑屈이라든가 阿附가 이루어지지 않은 程度의 本能的인 自然性이 顯著하게 있었다고 하는 論爭이 있었다. 典型的으로는 政治的 客体의 側에서 直接的인 表象으로서의 「權力意志」는 表面

化되지 않는다. 그런데 第二의 型에 있어서는 權力意志를 가지고 있는한 主体者가 個我意識에 依하여 自覺되어 있다. 다만 이 境遇에 있어서 主体性的 自覺은 다음에 述하는 第三의 型과 比較해서 理性的인 人格上的 自覺이라기 보다 오히려 赤裸裸하게 權力意志를 담당한다는 그 自体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打算的인 服從意識이 表面化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服從한다는 것이 權力意志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不然이면 服從한다는 것에 依해서 政治의 論理를 追求하려는 衝動과 意慾같은 것이 이 境遇에 服從者의 心理를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支配와 被支配와의 關係는 現實的 支配者와 可能的 支配者와의 關係程度에 지나지 않는다. 權力意志는 이 雙方間에는 普遍的이다. 소위 被支配者도 支配者와 같이 權力意志의 主体者가 分裂狀態에 놓여 있는데 지나지 않다. 그래서 被支配者는 그 權力意志를 측정하기 때문에 現實的 支配者에 對한 服從의 功利性을 배우는 것이다. 거기에 權力者에 對한 距離感을 自覺하게 된다. 打算的인 服從을 통해서 그대로의 自身の 權力意志를 充足시키고 可能的 支配者로부터 現實的 支配者로의 位置轉換을 하려는 의욕이 存在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服從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服從에는 內面的인 價値에 志向해서 忠誠으로 다짐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恐怖感이 있어도 支配者 만이 權力者에 이르는 畏敬感을 同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이러한 畏敬感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虛飾的이라든가 形式的이고 手段的인 것으로서 다만 自身の 權力意志를 實現시키기 爲해, 權力者에로의 近接性을 確實히 하는 方法으로써 行하여졌다고 보는 側面이 큰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境遇에는 이와같은 畏敬感이 輕侮感과 합쳐지는 일도 적지 않다. 그만큼 그러한 服從에는 간과할 수 없는 打算性이 눈에 띄고 있다.

이와같은 功利的服從도 그것이 固定的인 社會機構의 內部에 있어서 慣習的인 反復過程을 가질 때 언젠가 功利的인 打算性이 潛在意識化되어 어떤 때는 忘却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功利的服從은 盲目的 服從에 近接하게 되고 지극히 複雜한 複合態樣을 띄게 된다. 當初에는 功利的인 服從이 었던 것이 어느새 盲目的 服從에 가까운 習性이 被支配者의 精神構造 內部에 심어진다. 打算的服從은 目的意識이 애매하고 服從自体가 目的化 하기에 이른다. 本來 權力意志 達成의 手段으로서 取하여진 功利的 服從이 그 自体目的이 된다고 하는 것은 社會現象 一般에 보여지고, 소위 「目的變更」이라는 意味를 붙일 수 있는 事象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服從에 있어서 第一型과 第二型과는 理念型으로서 對立하고 있어 現實的인 對立으로서 嚴密度를 測定할 수는 없다. 理念型的인 兩極 사이에는 各種의 服從意識에 對한 段階가 存在하고 現實的인 複合態樣을 나타내고 있다. 故로 第一의 型은 未開社會에 第二의 型은 封建社會에 제각기 嚴密한 歷史的 範疇로서 對應한다는 것은 반듯이 問題의 實體의 分析은 될 수 없다. 歷史上 原始社會에서도 盲目的 服從의 形式과 並行해서 어떤 때는 混融해서 打算的 服從의 形式이 보인다. 어느 程度 全과 個가 未分化 였어도 生物學的인 個人의 存在는 不可避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個人을 前提로 한다면 個人의 心理的인 勞力이 어떠한 境遇는 素朴하고 實로 조금만 더하면 本能的

인 衝動의 形式을 제외했어도, 何等 打算性을 全然 排除시킬 수는 없다. 거기에는 部分的인 것은 있어도 功利的 服從의 形式이 介入되는 心理的 領域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또 一方에 있어서는 封建社會에 있어서도 典型的인 功利的 服從의 形式만이 全壓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動機에 있어서 功利的 服從인 것이라도 이러한 服從을 계속해서 行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習性化로부터 必然的인 目的變更을 同伴해서 그 固有의 目的을 상실하고 곧 盲目的 服從으로 轉質하는 境遇는 결코 두물지는 않다. 特히 後述하는 自律的 服從이 이루어지는 精神構造인 個我意識의 主体的인 創造性을 前提로 하지 않은 限功利性이라든가 打算性은 다시 첨가하자면 合理主義的인 慮過를 體驗하지 않은 他律性을 갖는 데서부터 容易하게 自我意識의 存立의 根據를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個我的 全体에 對한 服從, 權力意志의 主觀的인 擔當자의 客觀的인 擔當자로서의 服歸는, 언젠가 服從이 되고, 새로이 一轉해서 本能的, 盲目的인 服從이 된다. 封建社會에 있어서의 服從形式은 主從關係로 象徵되어 있는 것과 같이 習俗的, 超越的인 固定性으로 基礎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第二의 服從型 보다도 오히려 第1의 服從型 即 未開社會的인 盲目的 服從이 支配的이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本來부터 이와 같은 精神構造上的 問題의 考察로부터 心理的인 構造分析으로 轉換된다면 主從關係의 所無性에 關係 없이 服從者의 심리에는 目的的인 考慮에서 功利性이 混入된다. 다만 이 功利性에는 明確한 限界가 있다. 封建秩序 內部에 있어서는 支配者에게 服從하는 動기의 目的性에는 이 打算性이 숨겨져 있으나 이 打算性은 身分的 秩序 自体의 顛覆에 依해서 權力的 論理를 追求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秩序의 限界內에서 許容되는 範圍의 權力的 論理를 追求하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打算的 服從임에는 變함이 없다. 服從者의 打算性이 政治論理의 追求위에 놓여 있어서 바로 이 追求가 當該 身分的 秩序의 範圍內에서 行하여지는 境遇는 다음에 서술하는 服從의 第三型과는 相異한 側面에서 보여진다. 생각컨대 後者의 境遇에 있어서 自律的 服從에 打算性이 包含될 때 그 打算은 當該 秩序 自体도 變革 시킴으로써 해서 服從의 目的을 達成시키며 어떠한 自覺에도 그 始發點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功利的 服從의 境遇에 功利性은, 소위 功利主義 境遇에 있어서의 것과 반듯이 合致되지는 않는다. 前者의 境遇에는 全体와 個體와의 完全한 分化狀態가 前提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後者의 境遇에 있어서는, 兩者가 分化되어 있다. 따라서 前者가 容易하게 封建的인 範疇가 되는데 反해서 後者는 近代的 範疇의 것에 속한다. 特히 나이 後者는 이 功利性을 媒介로 해서 第三型으로서의 自律的 服從으로 이루어진다.

3. 內在的 支配와 自律的 服從

內在的 支配란 支配의 主体와 客体가 合一되는 데서 成立하는 支配形式이다. 支配한다고 해

도 支配의 第一型이라든가 第二型の 境遇에서와 같이 明確히 主体와 對置되는 客體를 豫想하는 것은 아니다. 勿論 主体와 客體와의 合一이라고 하지만 客體가 消滅해 버린다면 意味가 없어진다. 다만 그 客體는 언제나 主体的인 것에 媒介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있어서의 客體는 單純히 支配의 對象만은 아니다. 表面上 보여지는 支配의 根據라든가 動機나 主動的인 담당은 그 主体的인 것에 媒介된 客體의 側에 있다. 이 境遇에 支配의 根據로서 人民民主主義가 利用되고 主動的 責任者로서 選舉運動이라든가 選舉民團體가 生か되어지는 것은 이 事實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事實은 또한 意志決定의 技術方法으로서 多數決原理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內在的 支配에 있어서는 支配의 客體에 있어서도 다만 客體로서 멎는데 지나지 않는다. 客體에 媒介되어 結局은 自身이 다시 主体가 되고 있다. 이미 指適한 Max weber 의 Prinzip der Kleinen Zahl이라든가 Roberto Michels의 「寡頭政의 鉄則」을 承認한 事實과 內在的 支配의 原理를 承認 肯定하는 것은 반듯이 矛盾이라고 할 수 없다. 支配의 主体가 언제나 小數者로서 存在한다고 하는 것은 現象의 意味에 있어서는 當然한 것이어서 어떻게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도 政治的 宿命으로 남아있다. 다만 여기에서 政治가 單一人의 名으로 行하여지는가 小數者의 名으로 行하여지는가, 多數者의 名으로 行하여 지는가라는 데에 相違點이 있을 뿐이다. 故로 問題는 政治的 形式的인 담당자가 小數者임을 否定하지 않고 關係되는 담당자가 어떠한 根據에 依하고 있는가이고, 또한 服從의 形式的인 客體가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 하는데 있다. 이 小數者로서의 主体가 文字와 같이 客體로부터, 超越되어 있다면, 超越的 支配가 되며, 또한 客體와의 關係가 그 客體의 功利性을 前提로 하는 條件的인 것인 境遇에는 소위 條件的 服從으로서 停止되면 안된다.

內在的 服從인 境遇에 있어서는 이미 客體의 例에 服從意識이 自律性의 意識에 依해 昇華되는 結果로서의 意味에는 以前에 사람이 支配의 主体로서의 自覺을 갖고, 한편 이러한 自覺者로 나타난 곳에 成立하는 것이다. 服從의 第三型은 自律的 服從이다. 第一型은 典型的인 服從「意識」以前에 衝動的, 本能的 心理에 依해 行하여지는데 對해서 第三型은 服從意識後에 있어서 理性的, 目的的 心理와 倫理에 依해 갖어지는 것이다.

服從意識을 거이 갖고 있지 않은 點에 있어서는 兩者는 全혀 그 立場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第二型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個我意識이 全体와 個體와의 分化過程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點에 있어서는 第三型的 그것과의 接近은 顯著한 것이다. 그러나 第二型은 다시말하자면 何等の 點에서 全体와의 構造關連을 主体에 斷折하지 않고 第一型과의 結合의 길을 터 놓은데 對하여 第三의 型에 있어서는 服從의 主体는 完全한 自覺의 存在者이다. 服從이라고 하는, 言語의 使用은 반드시 妥當치 않은 程度의 積極的인 主体性이 前提된다. 第三型을 規定하고 있는 中心概念은 自律性 그 客體이다. 바로 自律性이란 全과 個와의 完全한 分化狀態를 前提로 해서 個我에 對한 自覺的인 限定的 底邊으로부터 指導된 精神作用이 一程이다. 「自律的 服從」은 服從의

客體側에 超越的인 異質性을 豫想하고 있지 않다. 服從의 主体와 客體와의 사이에 斷層은 없다.

第一型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絶對的인 超越性이라든가 宗教性에 基因한 뉴메도의 要素의 介入이 許容되지 않고 또한 第二型의 境遇에서와 같은 傳統이라든가 習俗으로부터 오는 에도스의 權威에 다짐된 데이오나소스의 要素의 介入도 認定되지 않는다. 오로지 아포르톤의 倫理에 依해서 服從의 主体와 客體가 合一되는 境遇에 「自律的 服從」의 特徵이 있다. 거기에 있어서는 超越的인 絶對性에의 畏怖를 통해서 無意識的 慣習에 基因하는 心理的 作用으로부터 服從이라는 社會的인 行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權力者에 對한 拒離性을 좁힌다는 것에 依해서 當該秩序의 内部에 許容되는 範圍의 權力意志를 본 것 같은 打算으로부터 受動的인 어떤 때는 또한 擬似的인 服從行動을 取하려는 功利性에 然由해서 그 服從行爲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服從한다고 하는 事實은 社會技術의 構造性에 對한 自覺을 前提로 해서 自律的으로 承認하는 段階에 지나지 않는다. 以前에 宗族이 統治의 唯一한 合法的 根據를 被支配者의 合意에 基因한다고 하였을 때 같은 點에 對한 自覺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自律的 服從의 論理로부터 본다면 服從이란 單純히 服從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服從이란 하나의 社會技術로서의 表現에 不過한 것이 아니라, 그 目的은 自己스스로 부터를 支配한다는 政治的인 自律性의 確立에 있다.

루소가 政治的 本質은 服從과 自由와의 調和에 있다는 것을 相起할 必要가 있다. 自律的 服從이 服從의 主体와 客體와의 合一을 통해서 結局은 支配의 原理에까지 轉質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에는 그 論理와 倫理가 있는 것이다. 服從이 自律性에 基因하는 것, 即 倫理的인 自我意識에 依해서 되어지는 것, 거기에 服從이 服從으로서 意味를 상실하지 않은 根據가 있는 것이다. 自律的 服從은 服從을 「最小限化」하려는 內在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다. 自律的 服從의 純粹理念으로부터 본다면 律理的 自律性의 原理에 呼應해서 自己 以外의 어떠한 支配者에 對한 服從이라도 자기 자신에 對한 律理的 服從에 지나지 않는다. 倫理的 意志에 基因해서 스스로 服從하려는 事實은 결코 自主성과 創造性에 背反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積極的인 支配의 原理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自律的 服從은 Democracy의 理念과 結付해서 議會制라든가 自治制의 社會制度和 連關하는 政治範疇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4. 支配·服從에 있어서 倫理性

政治權力의 行使를 받는 被治의 服從에는 超越的 支配이건 條件的 支配이건 內在的 支配이건 간에 거기에는 共通的인 前提條件이 存在하여야 한다. 그 前提條件은 倫理的인 原則을 內包한 것으로서 被支配者의 生活을 保障해 주고 人間으로서의 基本的 權利를 保障해 주는 것이다. 勿

論 對內的 秩序를 確保하고 對外的 安全을 도모한다는 것은 支配者를 爲해서나 被支配者를 爲해서도 重要한 것이다. 萬一 對內的인 秩序를 確保하지 못하고 對外的으로 安全에 重大한 侵害를 받을 때 經濟生活의 基盤은 破壞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被治者의 經濟生活은 被治者個人 또는 私的인 힘으로는 克服할 수 없는 障害에 直面하게 된다. 이러한 障害과 困難을 政治權力의 擔當者가 克服해 주고 그들의 經濟生活의 運營에 對한 保障을 해주는 것이야 말로 被治者가 治者로부터 期待하는 것이다. 治者가 直面하게 되는 여러가지 障害과 困難을 克服하고 被治者의 經濟生活을 保障하는 限에 있어서는 被治者는 治者의 그러한 能力을 信賴하고 服從을 繼續한다. 即被治者의 服從의 義務와 治者의 生活保障 義務라는 雙務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雙務的인 義務關係는 Grazia가 이른 바와 같이 一種의 Belief System에 依하여 相關關係에 놓여지고 있는 것이다. 政治權力이 超越的, 條件的, 內在的, 合法的인 諸形態의 妥當性의 根據는 어느 것이나 이 Belief System의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被支配者의 生活을 保障한다는 支配者의 義務履行은 政治權力의 倫理的 正當性에 必要한 하나의 條件에 不週하다. 實사 被治者의 生活이 거이 保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保障方式에 있어 Herman Heller가 말하는 소위 倫理的 法原則(Sittliche Rechtsgrundätze) 또는 法の「倫理的 構成原則」(ethisches konstitutionsprinzip)에 抵觸되어 있는 境遇에는 그 權力은 倫理的 正當性을 要求할 資格이 없는 것이다. 이 權力의 行使의 方式의 問題야말로 倫理的 正當性이 社會的 妥當性과 結合되는 第二의 據点이라 하겠다. 即 政治權力이 倫理的 法原則에 準據하여 行使되는 限에 있어서 社會的 妥當性도 保強되는 것이다. 勿論 여기서 말하는 倫理的 法原則은 基本的 人權을 規定하고 있는 憲法을 爲始한 其他의 實定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實定法을 받들고 있는 倫理的 原則인 것이다. 그러나 以上 二個의 点만으로도 政治權力關係 即 支配·服從에서 正當性을 保證하는데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支配權力이 被治者의 生活을 一旦 保障하고 또한 權力이 行使方式이 倫理的 法原則에 準據하고 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 權力이 實現하고자 하는 目標 및 理想이 倫理的 法原則에 一致하지 않으면 그 政治權力은 結局 倫理的 正當性이 否認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政治權力의 目的 및 理想의 內容이 倫理的 法原則에 合致될 것이 지배의 倫理的 正當性이 社會的 妥當性과 結合하는 第三의 據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倫理的 正當性이 社會的 妥當性과의 關聯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첫째로 治者가 被治者의 生活을 保障하는 義務를 履行하고 있느냐 與否의 問題요, 둘째로 權力의 行使方式이 倫理的 法原則에 符合되어야 한다는 点, 그리고 셋째로는 政治權力의 目標와 理想의 內容이 倫理的 法原則에 合致하고 있느냐 與否의 問題等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特히 問題視 하여야 할 것은 政治權力의 目標 및 理想의 內容을 倫理的 法原則에 合致시키는 課題이다. 이것은 政治權力의 本質에 비추어 매우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設使 被治者의 經濟的 생활이 保障되고 또 權力行使의 方式이 倫理的 法原則에 符合되고 나아가서는 權力의

社會의 妥當性도 保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萬一 權力的 強制的인 支配力이 被治者와 對立된 共同社會의 政治生活이 眞正한 共同生活의 實現을 指向하여 發展되고 計劃的으로 指導되지 않은다면 그것은 支配權力으로서 本來의 機能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支配力이 倫理的이고 倫理的 正當化를 追求하는데 있어서서는 政治權力이 倫理的 土台를 보다 動態的 觀點에서 考察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무릇 特定 政治權力이 動態的 側面을 보건데 個人 또는 集團이 자기의 良心에 비추어 特定의 政治權力이 倫理的 正當性을 否認하는 境遇가 흔히 있는 것이다. 特히 어느 時代이고 가장 銳敏한 感受性과 知性을 保有한 知識階級이 어떠한 形態로나 存在하여 그 一部가 그 時代의 政治權力의 倫理的 正當性을 判斷하여 否認하고 政治權力의 不安을 造成하는 境遇가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의 主張이 萬一 그 時代 그 社會에 妥當한 追從과 法意識을 代表하는 境遇에는 漸次 政治權力을 崩壞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一般的으로 볼 수 있는 傾向이다. 如何間 倫理的 正當性과 關聯하여 一部의 知識階級이 窮極的인 그 荷擔者는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最初로 그것을 問題化하는 主動者가 되고 있는 것이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權力의 동태에 있어서는 形式上 論爭의 焦點은 各種의 政治思想 即 「이데오로기」乃至 信念體系에 對한 問題이지 政治權力의 行使方式에 關한 倫理的 法原則이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니다. 事實上 各種의 思想的 葛藤의 背後에는 倫理的 法原則이 嚴存하고 있는 것이며 élite도 對抗에리메(Counter-élite)도 倫理的 法原則에 依하여 자신을 正當化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所謂 倫理的 法原則이라는 것이 具體的으로 어떠한 內容을 가지는가 그 內容中에는 或은 普遍的 人間性에 基礎를 둔 普遍妥當的인 要素도 있거니와 原則的으로는 文化圈에 依하여 制約되는 따라서 相對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內容에 關해서는 特히 時代에 따라 그리고 學者에 따라 各己 相異한 規定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적어도 現代에 있어서는 現代의 文明 諸國家에 依하여 承認되고 있는 一般의인 倫理的 法原則의 內容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具體的으로 民主主義라 할 수 있다. 이 點에 關하여 H. Heller는 單純히 古來로 정의의 最高原則으로 認定되어온 「各人에게 그의 것을」(Sun cvique tribute) 또는 Dekalog 혹은 國際領域에서 國際紛爭解決上 準據할 原則으로서 (1) 條約國際法 (2) 慣習國際法과 더불어 「文明 諸國에 依하여 承認되고 있는 法の 一般原則」 등을 示唆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倫理的 法原則의 內容에 關한 諸學說을 (a) 相對主義立場 (b) 自然法論的 立場으로 區分하여 說明할 수도 있을 것이다. 前者의 立場에 屬하는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Radbruch”의 相對主義와 “Maxism의 이데오로기의 相對主義이다. Radbruch”의 相對主義는 價値理念으로서 (a) 個人人格 即 人格的 自由의 價値, (b) 超個人的인 團體價値, (c) 文化價値等의 三者中의 그 어느 것에 優位를 賦與하느냐에 따라 (a) 個人主義의 世界觀, (b) 超個人主義的 또는 普遍主義的 團體主義的인 世界觀 및 (c) 超人格主義的인 世界觀의 三者로 區分하고, 以上 三者는 各己 (a) 自

由 (b) 國民, (c) 文化等으로서 表象되어 이들中 어떤 하나의 理念이 他者를 排除하고 그것만으로 唯一한 絶對的 正當性 및 客觀的 妥當性을 갖인 것으로 科學的으로 論證하기는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個人的 良心과 責任에 依하여 어떤 立場을 取하여야 할지 決定될 問題라는 것이다. 이러한 相對主義의 立場에서 各程의 價値体系의 同權的 並存을 提唱하는 것은 一程의 懷疑論에 不遇하고 반듯이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人間의 認識能力의 限界에 비추어 보아全然 一理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다만 個人的 良心이라는 것은 一種의 信念 또는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良心이 相爭이라는 것은 融和하고 解決하기가 極히 困難한 것이다. 信念이나 世界觀의 紛爭을 個人的 良心이나 責任으로 判斷하려고 한다면 一層 政治權力의 役割을 빌리게 될 것이고 여기에 相對主義는 도리어 絶對主義를 招來할 自家撞着에 빠지기 쉽다. 한편 「max」主義 立場은 政治權力이 觀点的 正當性을 否認하고 그 階級的 暴力的인 性格이 暴露的 批判을 하는데 있어 相對主義의 特徵이 內在한다. 卽 「맑스」主義에서는 自身の 立場을 確立하고 保障하는 究極的 原理가 缺如한데 弱點이 있다. 要컨대 現代에 있어서 倫理的 法原則의 內容에는 人類文明의 遺産인 自然法思想이 內包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Ⅰ 結 論

政治權力 關係에 있어서 支配, 服從의 正當化는 一定한 政治權力의 目標 또는 理想, 換言하면 一定한 世界觀的인 政治價値를 前提로 하여 비로소 可能한 것이다. 그리고 重要的 것은 그것을 可能케하는 條件이 具備되었을 때 政治權力은 正當化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前提로 하는 世界觀的인 政治價値는 端的으로 말하여 眞正한 共同生活인 것이다. 眞正한 共同生活이란 自由, 平等, 友愛다. 같은 形而上學的인 人間價値를 具現할 수 있고 具現되어지는 政治生活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支配, 服從에 있어서 政治權力의 目標 또는 理想을 指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權力의 行使方式의 倫理的 法原則에 適合하지 않으면 그 正治權力은 正當性을 要求할 資格이 없는 것이다. Maxsism의 目標 또는 理想은 眞情한 民主主義의 共產社會를 標榜하고 있지만 그것을 實現하기 爲하여 權力을 行使하는 方式이 倫理的 法原則에 違背되는 暴力과 獨裁를 客認하고 있기 때문에 正當化 될 수는 없는 것이다. 社會 및 國家의 共同生活을 實現하는데 支配, 服從이 指導原理는 倫理的 法原則에 適合한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며, 이러한 條件에 符合되는 것은 民主主義 以外에 없는 것이다. 民主主義는 그 自体 目的인 同時에 手段이 될 수 있는 眞理이기 때문이다. 分論 民主主義를 完全히 實現한 政治生活 卽 共同生活은 아직 現實世界에 實現된 일은 없는 現想에 不遇하다. 그러나 이 現想에 依하여 政治權力이 計劃的으로 指導된다면 그것은 正當化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民主主義를 具現化하는 政治

生活의 共同生活이란 理想이 達成될 수 있는 具體的 條件이 問題가 될 뿐이다. K. Mannheim 은 所謂 自由를 爲한 計劃政治 即 第三의 길을 建設하고 守護할 主動 勢力으로서 *Intelligentsia* 를 假定하고 있으나, 그러나 知識階級은 都大體 獨自의인 主體勢力이 缺如한 階層이다. 그러므로 結局 우리가 期待할 수 있는 것은 民主主義的 自治精神이라 하겠다. 即 共同生活을 志向하는 國民의 自治精神을 涵養하고 伸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國民 各者가 自治的이고 自律的인 民主主義 精神으로 武裝한다면 支配者는 即 被支配者이며 被支配者가 即 支配者가 된 것이며 政治權力이 強制的인 支配力은 被支配者와 對立하는 것이 아니고 被支配者의 自律的인 規制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支配者와 被支配者의 同一性, 換言하면 다스리는 者가 다스려지는 者이며 다스림을 받는 者가 다스리는 者가 되려면 모든 國民이 各己 政治問題를 判斷할 能力이 있고 그만큼 政治意識이 昂揚되지 않은限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이지만 人類가 經驗한 바로는 이러한 理想은 살아있는 것이며 그 實現이야말로 人類의 將來의 課題가 아닐 수 없다.

參 考 文 獻

- 1) Léry-Bruhl, Les fonctions mentales dans Les sociétés intérieures, Huitième édition, 1928, p. 7s9., 40s9., 131sp.
- 2) W. McDougall, The Group Mind, 1921, pp. 62ff.
- 3) Cf. E. Durkheim, Les formes élémentaire de la vie religieuse, séd 1968, p. 616sp., 624.
- 4) T. A. Kibot, La Logique des sentiments, 1904, p. 59 s9.
- 5) Vgl. Jellinek, Allgemeine, s 185, Gierke, Johannes, Althusius, 3. Autl., s. 378, H. Rehm, Geschichte der staatsrechtswissenschaft 1896, ss. 233ff.
- 6) Ravaisson, De l'habitude, 1933, p. 21s9, et Passim.
- 7) Cf. E. F. Carritt Morals and Plitics, 1935, pp. 80ff
- 8) Vgl. Tractatus politicus, 11, 4, cf. The political works, 1958.
- 9) Bentham, A Fragment on Government 1876, F. C. Montague (ed) 1931, pp. 14ff.
- 10) Cf. Lasswell, power and persnality, p. 109.
- 11) Cf. Social Contract (with an Introduction by Ernest Barker), reprint 1969, Oxford, pp. viiff
- 12) Vgl. Jürgen Dennert (herausg) Beza, Brutus, Hotman, Calvinistische Monarchomachen, 1968 (Klassiker der Politik, Bd. 8), ss. 61 ff.
- 13) Loke, op cit §73~76, 116~122.
- 14) Rousseau, Contrat Social, III, chap. XN.
- 15) Alfred Fouillée, La moral idée-force, 1907, p. 7s9.
- 16) Emorb S Bogarbus, Essentials of Social Psychology, 4th ed 1923, p. 174.
- 17) Freyer, a. a. o., ss. 248 ff.
- 18) C. E. Merriam: Political Power 1934, pp. 247~326.
- 19) C. E. Merriam: Systematic Politics, 1945, ch. 11, chl.

- 20) C. E. Merriam : Prologue to Politics, 1939. ch. III. V
- 21) 蟻山政道著. 政治學原理.
- 22) 猪本正道著. 政治學新講.
 〃 政治變動論.
- 23) 原田綱著. 政治學原論
- 24) 金雲峯著. 政治學要論.
- 25) 李恆燦著. 政治學.
- 26) 白尚健著. 政治學原論
- 27) 鄭仁興著. 政治學原論.
- 28) 閔丙台著. 政治學.

— *Summary* —A study on the form of Control and abedience
concerning palitical power*by**Her Sung-chul*

The palitical relation in the real situation returns to a concrete act of human, and the concret act of human is done according to the political power.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power is a Psychological relation between and man being ruled.

Although the political reation is completed by individual act of human in view of achieving a power ambition, the achievement is done by grop act of human which are of rules and orders of a society.

But it socialoze the power and the faction of rule in any casses.

Power is net originalited from the only force of a ruler or group of rulers, but it is originalited when man, group or class being ruled, has obedience will.

And a political relation shows as a relation of rule = obedience.

So we classify the types of rule and obedience and analyse the contents of them, and we have to adopt social propriety and ethic right fulness of the rule and obedience as a doctrine of lead in rule and obedience.

In this essay I especially emphasis that the aim of political power and the content of ideal has to be in accord with the ethic principle bothe ruler and man being ruled have to adopt the above mentioned as a practical guide post.